

자연환경보전법 개정('22.1.6. 시행)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

□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('22.1.6. 시행)

-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·자연도 권역·지역 추가[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('22.1.6. 시행)]

자연환경보전법('21.1.5.)	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('22.1.6.)
<p>제46조(생태계보전부담금) 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·감면기준·단위면적당 부과금액,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,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·자연도의 권역·지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.</p>	<p>제38조(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4와 같다.</p> <p>부칙 <제32327호, 2022. 1. 6.> 제2조(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제38조제2항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,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「광업법」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

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2의4] <신설 2022. 1. 6.>

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(제38조 관련)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
가.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
 - 1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·답·임야·염전·하천·유지·공원에 해당하는 경우: 1
 - 2) 1) 외의 지목인 경우: 0나. 녹지지역: 2
다. 생산관리지역: 2.5
라. 농림지역: 3
마. 보전관리지역: 3.5
바. 자연환경보전지역: 4

2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·자연도의 권역·지역별 지역계수
가.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1등급 권역: 4
나.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2등급 권역: 3
다.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3등급 권역: 2
라. 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: 5

비고

1. 법 제4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와 제2호에 따른 생태·자연도의 권역·지역별 지역계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한다.
2.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를 정할 때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·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 시 토지의 용도(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)에 따른다.

